

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##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1. 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시행)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기록표결 원칙 도입 및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사항 등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및 삭제  
(안 제1조·제14조·제19조의3·제52조·제82조)
- 의안발의 정족수 조례로 정함 (안 제20조)
  -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른 위임규정으로 현행대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으로 규정함
- 기록표결제도 도입 및 무기명투표 안건 규정 (안 제49조)
  - 행안부 표준안 반영하여 “기립”, “거수”표결 규정을 삭제하고, 무기명투표 대상 안건을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으로 반영함
  - 재의요구안의 대상안건 명확화: 재의요구안의 표결방법은 다른 안건 등과 같이 그 자체에 대하여 가부를 물으면, 표결결과를 “역(逆) 해석·적용을 해야 하는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며, 실제로 법적 문제가 발생한

사례가 있어, 규칙의 체계에 맞도록 재의요구 대상안건을 의결주문으로 하여  
가부를 묻는 제4항을 신설

-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사항 규정(안 제56조)
-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가능 규정 신설 (제62조의2)
-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규정(제66조의2,3,4)
  -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  
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# 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### 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  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 
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 
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#### 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
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##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71조 등”을 “제52조 및 제83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정한 회기(이하 “회기”라 한다)는 다시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63조제1항”을 “제72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제1항 중 “법 제66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7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“제1항 또는 제2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의장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

④의장은 준수제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할 경우에는 해당 재의요구안이 아닌 그 요구 대상안건에 관한 가부를 묻은 표결결과에 따라 확정 또는 폐기를 선포한다.

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의장은 의회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윤리위원회”라 한다)의 의원징계요구안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안과 수정안 중 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양정의 순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.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,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.

제52조를 삭제한다.

제5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11. 표결수

#### 12. 표결방법 및 찬성·반대·기권의원의 성명

제56조제1항 전단 중 “일반”을 “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계재”를 “공개”로 한다.

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3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

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제66조의4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 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2조제1항 중 “법 제79조”를 “법 제91조”로 한다.

제94조제1항 중 “법 제87조”를 “법 제98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법 제83조”를 “법 제95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

② ~ ⑤ (생략)

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

②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3조의2(조례안의 입법예고)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(신·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)·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법 제66조의 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고(이하 “입법예고라”라 한다) 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49조(표결방법)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.

있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제72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3조의2(조례안의 입법예고) ①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법 제77조제1항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표결방법) ①의장은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



제52조(표결결과 선포)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지정된 회의장소의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.  
(기존 제44조에서 이동 2011.2.1 8.)

제53조(회의록의 작성)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.

- 1. ~ 10. (생략)
- 11.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

<신설>

- 12. ~ 14. (생략)

- ② (생략)

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.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

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표결해야 한다. 이 경우 먼저 표결한 원안 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, 나머지 수정안 및 원안은 각각 폐기된 것으로 본다.

<삭제>

제53조(회의록의 작성) ①-----  
-----  
-----.

- 1. ~ 10. (현행과 같음)
- 11. 표결수

- 12. 표결방법 및 찬성·반대·기권의원의 성명

- 13. ~ 15. (현행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)
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56조(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) ① -----  
주민-----  
-----

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수 있다.

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·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제6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(이하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이라 한다)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 취지(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-----  
공개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2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제66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·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제안자”는 “청구인의 대표자 등”으로 본다.

<신 설>

제66조의3(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.

<신 설>

제66조의4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 52조의2

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2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

② (생략)

제94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의장은 법 제87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(생략)

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

제82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---- 법 제91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4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---- 법 제98조

② (현행과 같음)

③----- 법 제95조

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  
에게 제출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-----  
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[붙임 3]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\_\_\_\_\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